「직원 성과급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3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13. 10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64/compare?from=408&to=40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7:24:4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진흥실장, 재무실장, 총무부장, 예산팀장으로 한다.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.	**제8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처장, 입학처장, 인성교육원장, 재무실장, 사무부처장, 예산팀장, 교수(4)로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.
제10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 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	**제10조(기능)** 본 위원회는 제 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(지급기준, 지급율, 기준액, 기타)을 심의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
제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.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: 95점이상, A: 90~95미만, B: 85~90미만, C: 80~85미만, D: 80점미만 80%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. 소행협위원이 평가(항목: 업무량, 중요도, 보상현실, 이미지, 발전기여도)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(사무기획, 시설관리, 대민서비스) 3. 각 부서를 S, A, B로 분류(각 등급별 균등 할당) 4.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	**제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**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.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: 95점이상, A: 90~95미만, B: 85~90미만, C: 80~85미만, D: 80점미만 80%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. 소행협위원이 평가(항목: 업무량, 중요도, 보상현실, 이미지, 발전기여도)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(사무기획, 시설관리, 대민서비스) 3. 각 부서를 S, A, B로 분류(각 등급별 균등 할당) 4.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

현 행	개 정 안
20% 20 18 16 14 12 합계 100% 기타 1. 자녀수(0명 – 0점, 1명 – 1점, 2명 – 2점, 3명이상 – 3점) 2. 사회봉사(1회 1점, 2회 2점, 3회이상 3점, 헌혈포함) 3. 자격증(국가공인 1개2점, 2개이상 3점) 4. 승급지연 년한 :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(승급지연에 대한 보상, 단,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) (5년차이상 5점, 4년차 4점, 3년차 3점, 2년차 2점, 1년차이하 1점) ☆ 교육/사회봉사 1회기준 : 8시간(1일) ☆ 봉사,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+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(일반 · 기술 / 기능)로 상위비율로 정한다. 단,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(근무평정, 부서평가)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%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. 상대평가 상위 비율(%) 성과상여금 지급률(%) 0≣ 10 130 11≣ 20 120 21≣ 30 110 31≣ 70 100 71≣ 80 90 81≣ 90 80 91≣ 100 70	20% 20 18 16 14 12 합계 100% 기타 1. 자녀수(0명 – 0점, 1명 – 1점, 2명 – 2점, 3명이상 – 3점) 2. 사회봉사(1회 1점, 2회 2점, 3회이상 3점, 헌혈포함) 3. 자격증(국가공인 1개2점, 2개이상 3점) 4. 승급지연 년한 :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(승급지연에 대한 보상, 단,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) (5년차이상 5점, 4년차 4점, 3년차 3점, 2년차 2점, 1년차이하 1점) ☆ 교육/사회봉사 1회기준 : 8시간(1일) ☆ 봉사,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+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(일반 · 기술 / 기능)로 상위비율로 정한다. 단,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(근무평정, 부서평가)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%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. ③ 특별사업 위원회 혹은 TFT 참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침을 둔다.〈신설 2016-02-29〉 상대평가 상위 비율(%) 성과상여금 지급률(%) 0≣ 10 130 11≣ 20 120 21≣ 30 110 31≣ 70 100 71≣ 80 90 81≣ 90 80 91≣ 100 70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원 성과급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연구진흥실장, 재무실장, 총무부장, 예산팀장으로 한다."를 "연구처장, 입학처장, 인성교육원장, 재무실장, 사무부처장, 예산팀장, 교수(4)로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"로 한다.

제10조 중 "사항"을 "사항(지급기준, 지급율, 기준액, 기타)"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.
평가척도
내 용
전체
비중
등 급
S
A
B
C
D
근무평정
다면평가 시행적용
S: 95점이상, A: 90~95미만, B: 85~90미만, C: 80~85미만, D: 80점미만
80%
70
65
60
55
50
부서평가
1. 소행협위원이 평가(항목: 업무량, 중요도, 보상현실, 이미지, 발전기여도)
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(사무기획, 시설관리, 대민서비스)
3. 각 부서를 S, A, B로 분류(각 등급별 균등 할당)
4.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
20%
20
18
16
14
12
합계
100%
기타
1. 자녀수(0명 – 0점, 1명 – 1점, 2명 – 2점, 3명이상 – 3점)
2. 사회봉사(1회 1점, 2회 2점, 3회이상 3점, 헌혈포함)
3. 자격증(국가공인 1개2점, 2개이상 3점)
4. 승급지연 년한 :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(승급지연에 대한 보상, 단,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)
(5년차이상 5점, 4년차 4점, 3년차 3점, 2년차 2점, 1년차이하 1점)
☆ 교육/사회봉사 1회기준 : 8시간(1일)
☆ 봉사,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

+α

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(일반 · 기술 / 기능)로 상위비율로 정한다. 단,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(근무평정, 부서평가)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%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.

③ 특별사업 위원회 혹은 TFT 참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침을 둔다.

상대평가 상위 비율(%)

성과상여금 지급률(%)

0≣ 10

130

11≣ 20

120

21≣ 30

110

31≣ 70

100

71≣ 80

90

81≣ 90

80

91≣ 100

70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